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4 선고 2020가단52302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홍록]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승 [담당변호사 여운승]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2. 2. 4.

주 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과 피고 B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매매예약 및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사이에 2018.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274,865,8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4,865,8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B,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 주문 제1, 2항과 같다.

○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과 피고 B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매매예약 및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 200,0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5.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6. 14.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8. 12.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10. 27.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7. 3. 27.경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이하 'E'라 한다)과 사이에, E가 주식회사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 주식회사 F,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 2017. 3. 28.부터 2018. 3. 27.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약정(이하 '제1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11. 27.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위 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 주식회사 H,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7. 11. 27.부터 2018. 11. 26.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약정(이하 '제2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E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보험약정 당시 E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나 I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 부도(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독촉이나 통지 없이 원고가 부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주식회사 F는 제1보험약정에 따른 증권을 담보로 E에 원료돈 등을 공급하다가 2017. 5.경부터 물품대금채무가 연체되어 거래를 중단하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4. 19.경 주식회사 F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92468호로 “E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5.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6. 14.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H는 제2보험약정에 따른 증권을 담보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에 원료돈 등을 공급하다가 2017. 12.경부터 물품대금채무가 연체되어 거래를 중단하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1. 30.경 주식회사 H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7753호로 “E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8. 12.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10. 27.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E의 재산처분행위 등

(1) E는 별지 목록 제1, 6, 7, 8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2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토지 등의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28.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 합계는 약 2,000,000,000원이었다.

(2) E는 2018. 2. 28.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위 가등기는 2018.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0. 3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앞으로 이전되었다.

(3) 또한 E는 2018. 9. 10.경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피고 C에게 이전된 가등기에 기하여 2018. 10. 3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본등기를 위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4) 그 후 피고 C은 2019. 1. 3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기타 권리관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의 J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주식회사 K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다만 별지 목록 제1, 6, 7, 8항 기재 부동산에 한함)가 각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2019. 1. 31. 해지로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E는 원고를 포함한 금융기관, 카드회사, 세무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채권자	채무액(원)
1	원고	200,000,000
2	신용보증기금	103,500,454
3	L회사	22,383,000
4	M은행	349,993,000
5	N은행	20,000,000
6	O조합	86,997,000
7	P조합	173,219,000

8	Q회사	15,000,000
9	R회사	10,000,000
10	기업은행	4,990,000
11	S카드	4,990,000
12	동대문세무서	50,000,000
	합계	1,041,072,45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채무자인 E의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20.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은 이것이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E는 원고와의 제1보험약정 및 제2보험약정의 연대보증약정 체결 이후 시점인 2018. 2. 말경에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E가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처분한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2019. 9. 2. 이전에 위와 같이 E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것이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달리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E가 2017. 5.경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체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 2017. 12.경 주식회사 H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제1보험약정의 주채무자이자 제2보험약정의 연대보증인인 E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 상태에서 E는 자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는바,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E의 채무초과상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E가 소유하던 시가 합계 약 2,000,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J조합 및 주식회사 K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위 J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J조합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80,000,000원(이자 불포함), 주식회사 K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약 40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E의 적극재산은 약 1,120,000,000원(= 2,000,000,000원 - 480,000,000원 - 400,000,000원)이 된다.

한편 앞서 기초사실 '다(2)'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E는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세무서 등에 1,041,072,45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액과 적극재산의 차액은 78,927,546원(= 1,120,000,000원 - 1,041,072,454원)이다.

그리고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E는 T에 대하여 위 78,927,546원 이상임이 명백한 다액의 채무1)를 더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E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이 분명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처럼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한 행위는,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E와 수익자인 피고 B 및 피고 C, 전득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내용

E는 T의 소개로 U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면서도 그 매수대금 및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T이 이를 대신 부담하여 왔다. 그러다가 T은 2017. 8.경 E와

사이에 지금까지 T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총 1,300,000,000원(인허가, 대관업무 민원처리비 200,000,000원, 토목 200,000,000원, 건축 90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는데, E는 건물 준공 이후에도 담보대출을 받는 데 실패하여 제대로 된 이행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T은 우선 E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등을 담보하고 토지잔금 등을 확보할 방안을 찾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 B 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받아두었다. 그리고 나서는 위 부동산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그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즉, E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판례), 이 사건의 경우도 그와 유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애초에 E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판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역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자금의 융통이나 기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행위가 아니라 공동담보의 부족을 실질적으로 초래하는 소유권이전행위이므로, 피고 B, C이 들고 있는 판례 사안과는 다르다. 즉, E는 일반 채권자들 중의 하나인 T(피고 B 명의)에게만 대물변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득을 주거나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충분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E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까지 담보하고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민법 제666조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 C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내용

이 사건 매매예약은 E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등을 담보하고 토지잔금 등을 확보할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잠시 피고 B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려던 것에 불과하고, 이후 실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 앞으로 이루어졌다. 피고 B은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예까지 위 피고에게 수익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관계,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로 인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실제 수익자가 얻은 이익을 반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B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D의 항변에 관하여

(가) 항변의 내용

피고 D은 신탁사로서 담보신탁 서류만을 징구하여 확인한 후 바로 신탁을 접수할 뿐, 위탁자인 피고 C의 소유권 취득 경위 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선의의 전득자이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D은 부동산신탁의 수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신탁회사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E와 피고 C 사이의 관계, E의 자력 상황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위탁자도 아닌 E의 자력 상황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는 어렵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얻을 이익이 있었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피고 C이 2018. 10. 31. 자신 앞으로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직권말소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19. 1. 31.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J조합과 주식회사 K 명의의 각 근저당권 역시 2019. 1. 31. 위 신탁계약 체결에 앞서 전부 말소되었다. 그렇다면, 신탁회사인 피고 D의 입장에서 이처럼 이미 말소된 압류나 제한물권의 해제 경위까지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D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J조합 및 주식회사 K의 각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12.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그 시가로 추인되는 금액인 2,000,000,000원에서 J조합 및 주식회사 K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704,000,000원(= 2,000,000,000원 - 576,000,000원 - 720,000,000원) 이상이고, ②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74,865,863원(= 제1보험약정에 기한 채권액 208,645,317원³⁾ + 제2보험약정에 기한 채권액 66,220,546원⁴⁾)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그중 더 적은 금액인 274,865,863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274,865,86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세영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V

대 4876㎡

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V, W에 있는 X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Y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96㎡

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V, W에 있는 Z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Y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96㎡

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V, W에 있는 AA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Y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96㎡

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V, W에 있는 AB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Y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96㎡

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AC

대 4950㎡

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AD

도로 638㎡

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AE

임야 1875㎡

-끝-

1) 피고 B,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E가 T에 대하여 1,300,000,000원의 용역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자세한 내용은 후술).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이 2016. 1.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E 대신 약 7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E는 T에 대하여 적어도 700,000,000원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일응 인정할 수 있다.

2)정확한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000,000,000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그 이하인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704,000,000원보다 적을 수는 없다.

3)150,000,000원 + 739,726원{= 150,000,000원 × (2018. 4. 20.부터 2018. 5. 19.까지 30일/365일) × 연 6%} + 14,459,016원{= 150,000,000원 × (2018. 5. 20.부터 2019. 6. 14.까지 1년 + 26일/366일) × 연 9%} + 43,446,575원{= 150,000,000원 × (2019. 6.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12.까지 2년 + 151일/365일) × 연 12%}

4)50,000,000원 + 246,575원{= 50,000,000원 × (2018. 12. 1.부터 2018. 12. 30.까지 30일/365일) × 연 6%} + 3,710,958원{= 50,000,000원 × (2018. 12. 31.부터 2019. 10. 27.까지 301일)/365일 × 연 9%} + 12,263,013원{= 50,000,000원 × (2019. 10.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12.까지 2년 + 16일/365일) × 연 12%}